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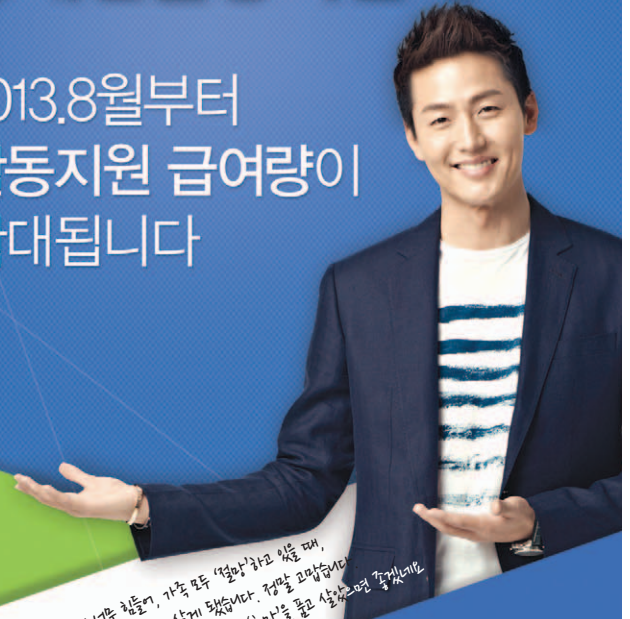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활동지원제도

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세요?

2013.8월부터 활동지원 급여량이 확대됩니다

국번없이 129 또는 1355



지난 한때 장애를 안다는 게 너무 힘들거, 가족 모두 생각하고 있을 때, 활동보조인 덕분에 보시는 다시 희망을 품고 살게 됐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저와 같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

김○○ 님 / 2012년 장애인활동지원 체험수기 중

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문의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
- 홈페이지 www.ableservice.or.kr

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





2013년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량이 달라집니다!

심야·공휴일 제공하는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인상함에 따라 기본급여량 및 일부 추가급여량을 확대합니다.

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기본 급여	1등급	91만9천 원 (107시간)	101만원 (약 118시간)
	2등급	73만8천 원 (86시간)	81만원 (약 94시간)
	3등급	55만6천 원 (65시간)	61만원 (약 71시간)
	4등급	37만4천 원 (43시간)	41만원 (약 47시간)
추가 급여	최중증 독거가구	216만3천 원 (253시간)	234만 1천원 (약 273시간)
	최중증 취약가구	216만3천 원 (253시간)	234만 1천원 (약 273시간)

※ 급여의 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(시간당단가 : 8,550원) 산정

독거·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
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1등급 독거가구	171천 원 (20시간)	684천 원 (80시간)
1등급 취약가구	171천 원 (20시간)	684천 원 (80시간)

직장에 다니시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였습니다.

변경 전	변경 후
86천원(10시간)	342천원(40시간)

심야·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
기준에 맞추어 인상하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였
습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원	12,830원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원	12,830원

※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8,550원은 변동 없음

장애인활동지원제도

1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록 1급, 2급 장애인이
어야 합니다

- ⊗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⊗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, 노인장기요양급
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2 신청은 어디에, 어떻게 하나요?
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
신청하세요.

- 신청일시**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장소**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신청서류** 본인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
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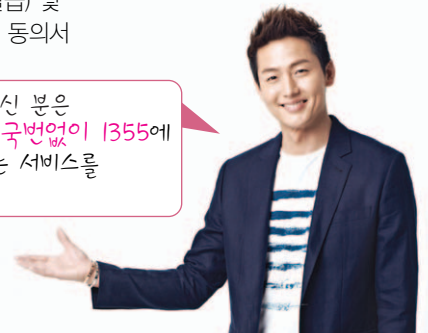
지참서류

- ⊗ 본인명의 통장사본 (본인부담금 환급용)
- ⊗ 건강보험증
- ※ 대리 신청시 : 대리인 신분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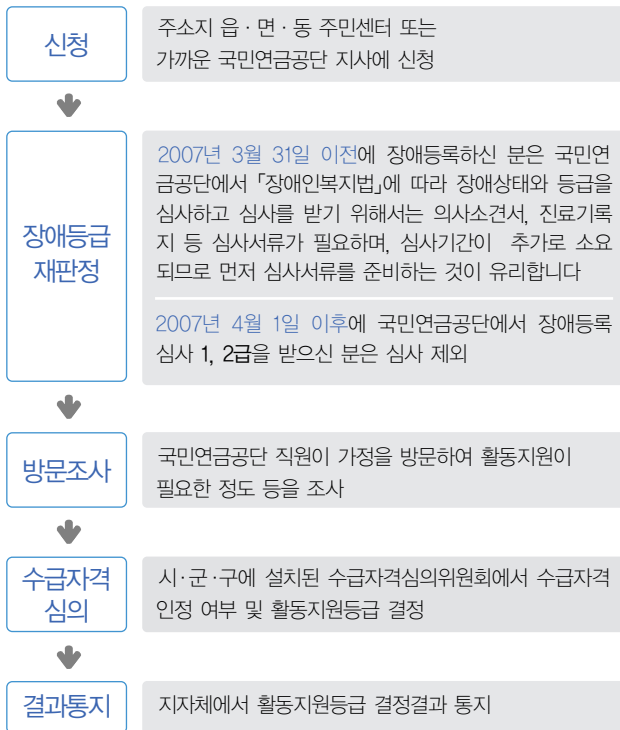
작성서류 (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)

- ⊗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- ⊗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및
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

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은
국민연금공단 지사 **국번없이 1355**에
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
지원해 드립니다.



3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?



이의신청

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

- ☎ 방문, 우편, 팩스 등

4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활동지원급여 종류

- ☎ 활동보조 :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이동보조 등
- ☎ 방문목욕 : 목욕차량 등 이용
- ☎ 방문간호 : 간호, 요양에 관한 상담, 구강위생서비스 등

월 한도액(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)

- ☎ 월한도액 = 기본급여 + 추가급여

기본급여

- ☎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
101만원 (118시간)	81만원 (94시간)	61만원 (71시간)	41만원 (47시간)

추가급여

- ☎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

구분	추가급여	구분	추가급여	구분	추가급여
최중증 1인 가구/ 최중증 취약가구	2,341천원 (273시간)	출산 가구	684천원 (80시간)	학교생활	86천원 (10시간)
1등급 1인 가구/ 1등급 취약가구	684천원 (80시간)	자립 준비	171천원 (20시간)	보호자 일시부재	171천원 (20시간)
2등급이하 1인가구/ 2등급이하 취약가구	171천원 (20시간)	직장 생활	342천원 (40시간)	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	624천원 (73시간)



5 본인 부담금은 무엇이고, 얼마인가요?

본인부담금이란?

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 합니다.

기본급여

구 분	본인 부담금 비율	활동지원 등급				
		4등급	3등급	2등급	1등급	
기초수급자	면제	면제	면제	면제	면제	
차상위계층	정액	20,000	20,000	20,000	20,000	
전국 가구 평균 소득 비율 (4인 가구 기준 월소득)	50%이하 (237만원)	6%	24,600	36,600	48,600	60,600
	100%이하 (474만원)	9%	36,900	54,900	72,900	90,900
	150%이하 (710만원)	12%	49,200	73,200	94,500	94,500
	150%초과 (710만원)	15%	61,500	91,500	94,500	94,500

추가급여

구 분	본인 부담금 비율	추가급여 월 한도액						
		86천원	171천원	342천원	624천원	684천원	2,341천원	
기초수급자	면제	면제						
차상위계층	면제	면제						
전국 가구 평균 소득 비율 (4인 가구 기준 월소득)	50%이하 (237만원)	2%	1,700	3,400	6,800	12,400	13,600	46,800
	100%이하 (474만원)	3%	2,500	5,100	10,200	18,700	20,500	70,200
	150%이하 (710만원)	4%	3,400	6,800	13,600	24,900	27,300	93,600
	150%초과 (710만원)	5%	4,300	8,500	17,100	31,200	34,200	117,000

6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
[1]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'서비스 이용계약' 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

활동지원기관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(www.ableservice.or.kr)에서 확인

[2] 서비스 내용,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 기관과 서비스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

[3] 계약 체결 후 '월별급여제공일정표'와 '서비스 제공 계획서'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.



본인부담금 납부방법

- ⊗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
- ⊗ 입금하실 계좌는 시군구청에서 안내해드린 '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- 만약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- ⊗ 입금방법 : 자동이체, 무통장송금, 인터넷·폰뱅킹 등